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4
----------	-----

2024. 11. 27.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2024. 11. 4. 노애자 의원 등 10인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7.)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노애자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조항 정비 (안 제6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련 대부료 감면 (안 제30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주체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공고의 방법에 구보를 추가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0조제3항’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기 언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위임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감면한다” 로 개정하고자 있는데, 이는 조례가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단체장의 집행권한에 대한 침해의 여지로 인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2024.11.8.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의1) 규정과 조례의 집행에 있어 혼돈의 여지가 있어 추후 집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개정안	수정안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p> <p>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p> <p>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p>

나. 종합의견

1)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주체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공고의 방법에 구보를 추가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개정조례안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계된 개정안으로 강남구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강의 규정을 두어 개별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및 개별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집행의 통일성과 규정의 체계화를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424

제안연월일: 2024. 11. 27.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공유재산법 및 개별 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집행의 통일성과 규정의 체계화를 위해 감면 조문 일부를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문 수정(안 제30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제3항 중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생략)</p> <p>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p> <p>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p>	<p>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p> <p>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p>

④ · ⑤ (생략)	<u>또는 사용허가 하는</u> <u>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음)	<u>또는 사용허가 하는</u> <u>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92조”를 “구청장은 법 제92조”로,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를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u>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u>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u></u></p>	<p>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u>구 청장은 법 제92조-----</u> ----- ----- -- <u>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③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7조 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u>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u></p>	<p>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u> 1.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u></p>

④ · ⑤ (생략)	<u>용허가 하는 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4
----------	-----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노애자 · 이성수 · 김광심 ·
김진경 · 손민기 · 이향숙 ·
김영권 · 황영각 · 한윤수 ·
윤석민 의원(이상 10인)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조항 정비 (안 제6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련 대부료 감면 (안 제3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92조”를 “구청장은 법 제92조”로,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를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u>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u>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구 청장은 법 제92조----- ----- ----- -- <u>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생략) ③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 제7조 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u> 1.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 제7조 제2호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